



환경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28.(수) 12:00 (목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12. 27.(화)
담당 부서 <총괄>	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	책임자	사무국장 신지형 (044-201-7940)
		담당자	사무관 장정호 (044-201-7955)

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피해 통합해 처리

-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설치 -

-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·산하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'환경분쟁 조정법'이 개정된다.
-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(위원장 박용규)는 '환경분쟁 조정법'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6개 법안*이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.
 - * △환경분쟁 조정법, △환경보건법, △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, △석면피해구제법, △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, △석면안전관리법
- 환경부는 법률 개정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24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법률 개정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강피해조사, 환경분쟁조정, 환경피해 구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기반을 정비하는 것과 법률 명칭의 변경 등이 있다.
 - 법률 명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'환경분쟁 조정'뿐만 아니라 '건강피해조사'와 '피해구제'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'환경분쟁 조정법'에서 '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'로 변경된다.

- 법률 개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확대되고 건강피해조사*와 구제** 사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된다.

* 역학조사,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, 주민요청에 의한 석면피해조사를 통칭하는 규정 신설

** 환경오염, 석면,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이관에 따라 피해구제의 핵심 내용인 구제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된 위원회 결정을 통칭하는 규정 신설

- 환경오염, 석면,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위원회 및 환경보건위원회 일부(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) 사무가 통합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관련 조직이 개편된다.

- 이에 따라,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조정, 건강영향조사 청원, 환경오염·석면·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사건의 신청, 조사 및 피해판정을 통합하여 관리될 예정이다.

- 건강피해조사, 분쟁조정,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신청된 각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‘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 해결’이 가능하도록 구제 절차를 상호 연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규정이 마련된다.

- 건강영향조사 청원,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피해의 원인에 화학물질, 살생물제품이 추가된다.

- 분쟁조정 불성립 시 또는 피해구제 불인정 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 각각으로 신청된 사건에 대해 상호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.

- 특히,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.

□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“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하려는 취지는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문기관에서 제도별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환경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
2. 질의응답. 끝.

담당 부서 <총괄> <환경분쟁조정법> <환경보건법>	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	책임자	사무국장	신지형 (044-201-7940)
		담당자	사무관	장정호 (044-201-7955)
	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지영 (044-201-67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찬웅 (044-201-6762)
<환경오염 피해 구제법, 석면피해구제법, 석면안전관리법, 화학제품안전법>	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	책임자	과 장	서민아 (044-201-6810)
		담당자	사무관	윤혜린 (044-201-6819)



(1) 「환경분쟁 조정법」 전부개정

① 제명 및 구성 변경

- 「환경분쟁 조정법」 →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 -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사무 확대에 따라 '환경분쟁 조정' 뿐만 아니라 '건강피해조사'와 '피해구제'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제명 변경
- 목적, 위원회 소관사무·구성 및 운영 등 개정, 건강피해조사(역학조사,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) 및 피해구제 절차 신설

- 제1장(총칙) 목적(제1조), 정의(제2조) 개정
- 제2장(환경분쟁조정위원회) 소관사무(제5조), 관할(제6조), 구성·운영(제5조부터 제20조) 등 개정
- 제3장(건강피해조사) 역학조사,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절차(제32조부터 제36조) 신설
- 제4장(환경분쟁 조정(調整)) 분쟁조정 절차 조항은 현행 유지
- 제5장(구제) 환경오염, 석면,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절차(제95조부터 제98조) 신설

② 환경피해 개념 확대

- 건강영향조사, 분쟁조정, 피해구제 사건 연계가 가능하도록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 개념 확대
 - 환경피해의 원인에 화학물질, 살생물제품 추가하여 건강영향조사,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정

③ 건강피해조사·구제 정의 규정 신설

-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사무 확대에 따라 건강피해조사*, 구제** 정의 신설
 - * (건강피해조사) 역학조사,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, 주민요청에 의한 석면피해조사를 통칭하는 규정 신설
 - ** (구제) 환경오염, 석면,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이관에 따라 피해구제의 핵심 내용인 구제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된 위원회 결정을 통칭하는 규정 신설

4 위원회 권한

- (사건 회부)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강피해조사·분쟁조정·피해구제 신청된 각 사건에 대하여 상호 회부할 수 있는 조항 신설
 - 분쟁조정 불성립 시 또는 피해구제 불인정 시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- (직권 조정)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 조정* 가능
 - *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,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결정(조정(결정)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)
 - 신설되는 건강피해조사와 사건 회부가 직권 조정 제도와 연계될 경우 보다 실효성 있게 국민의 환경피해 구제 가능

5 건강피해조사 절차 규정 신설

- 분쟁조정,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직권으로 역학조사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
 - 현행 환경보건법상의 역학조사(제15조제2항)를 사전예방적 기능과 사후구제 기능으로 구분하여 사후구제(분쟁, 구제 연관) 기능을 이관
- 환경부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기능을 중조위로 이관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

6 구제 절차 규정 신설

-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의 신청, 조사 및 피해판정은 중조위가 통합 관리하고, 구체적인 피해구제 절차 등은 개별 피해구제법에서 각각 정함

[2] 「환경보건법」 일부개정

-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사항 중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고, 관련 조항은 삭제

[3]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환경오염피해구제법”) 일부개정

-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·조사·판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
- 환경오염피해구제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

[4]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일부개정

- 석면피해 구제급여 조사·판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
- 석면피해구제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

[5]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화학제품안전법”) 일부개정

-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신청·조사·판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
-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

[6]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일부개정

- 석면의 안전한 관리 및 건강피해 예방에 대한 심의 등은 환경보건위원회* 산하 분과위원회(개편)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

* 원스톱서비스로 통합되는 기능 외의 위원회는 환경보건위원회로 통합 추진 중

붙임 2 질의응답

①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?

☞ 우선 1단계(23년)로 관련 법률* 개정을 통한 기능 개편을 통해 환경부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국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, 건강피해 역학조사와 환경오염·석면·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업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개별 제도의 통합·연계 기반을 마련할 예정

※ 「환경분쟁 조정법, 「환경보건법」,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, 「석면피해구제법」,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석면안전관리법」

☞ 따라서,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상담을 받아 신청만 하면 건강피해조사, 환경분쟁조정, 환경오염·석면·살생물제품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됨

※ 석면피해 구제 신청은 지역주민 편의성 고려 현행 시·군·구 유지

☞ 2단계(24년)로 건강피해조사·환경분쟁·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할 계획

참고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

○ 건강영향조사-분쟁조정-피해구제 사무(신청-조사-판정)의 통합 관리



②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?

- ☞ 국민이 특정 환경피해 구제절차 완료 후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결과에 불복하여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할 경우 추가적인 사건 처리에 필요한 시간 및 행정력이 소요됨
- ☞ 따라서,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이 환경피해에 대해 환경 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만 하면 사건특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연계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음

참고

원스톱서비스 관련 제도간 상호연계 처리 방안

○ 건강영향조사-분쟁조정-피해구제 제도별 특징점*을 고려 연계 처리

- * (건강영향조사) 지역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피해 인과관계 조사
- (분쟁조정) 당사자 간 입장 조정으로 금전배상 외 다양하고 유연한 해결방안 도출
- (피해구제) 원인행위자에 의한 배상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구제급여 지급

